

## 2. 상속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(상증법 §3, §3의2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(과세대상)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기준</p> <p>○ 피상속인이 거주자 :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</p> <p>○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: 국내 소재 상속재산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상속인(수유자)·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* 종합 고려</p> <p style="font-size: small;">* 단기 거주 외국인(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·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)은 비거주자로 간주</p> <p>○ 상속인·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: 국내외 모든 상속취득재산</p> <p>○ 상속인·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상속인이 거주자 : 국내외 모든 상속취득재산</li> <li>-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: 국내 소재 상속취득재산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상속세 과세대상 기준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